

18세기 중반 이후 쓰시마의 아명도서 요청 중단과 그 배경*

유채연 _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목 차

- I. 머리말
- II. 17세기 중반 ~ 18세기 전반 아명도서 발급의 추이와
- III. 제도의 정착
- IV. 18세기 중반 이후 아명도서 요청 공백과 원인
- V. 맺음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친 아명도서의 발급 추이와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조선이 구축한 외교 원칙이 조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규범화되고 작동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첫째,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도서 남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직책에 따른 발급’이라는 엄격한 규정을 수립하였다. 쓰시마의 변칙적인 요구와 격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일관되게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도서 발급 규정을 외교적 규범으로 안착시켰다. 그 결과, 쓰시마는 조선의 질서를 준수하는 틀 안에서만 경제적 실리를 보장받는 외교적 전례를 확립하게 되었다.

둘째, 1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1세기 가까이 도서 요청의 공백은 제도의 약화가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5장 「조일관계의 변질과 도서제의 종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함.

아닌, 조선이 확립한 외교 규범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당시 재정난을 겪던 쓰시마는 실리 확보가 절실하였으나, 규정에 어긋난 무리한 요구로는 조선의 확고한 원칙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인지하고 요청을 중단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조선 주도의 외교 질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조일 관계, 아명도서, 직책에 따른 발급, 도서 요청의 공백기, 외교 전례

1. 머리말

1609년(광해군 1) 체결된 기유약조는 조선과 일본의 통교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대일관계에 대한 구상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 기유약조에서는 접대 대상과 내용, 쓰시마 번주에게 지급하는 세견선과 歲賜米豆, 文引의 발급과 입항 규정, 過海糧 지급 및 왜관 체류 일수 등을 규정하였다.¹⁾ 또한 조선은 쓰시마 번주에게 도서를 발급하고, 文引 발행권을 허락함으로써 조일 관계에서 쓰시마의 통교 권한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은 쓰시마에 대해 대조선 교역 규모를 축소시켰다. 기유약조에서는 쓰시마 번주에게 연간 파견할 수 있는 세견선 20척, 세사미두 100석 지급을 규정하였다. 이는 1443년 계해약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에 일조한 쓰시마에 대한 징벌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은 수직인의 수를 줄이고, 매년 1회 조선에 직접 내조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조선은 기유약조에서 막부를 대신한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 업무를 인정하고, 무역을 허락하면서도 교역 규모는 임진왜란 이전보다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쓰시마는 무역량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는 상황에 처하였

1) 『증정교린지』 권4 「약조」.

다. 이에 쓰시마는 조선에 파견하는 使送船의 수를 늘려 조선과의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도서 추가 발급을 통해 受圖書船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²⁾ 그 결과 17세기 전반 쓰시마는 玄蘇圖書, 景直圖書, 彦三圖書, 流芳院圖書, 萬松院圖書를 추가적으로 발급받았다.³⁾ 이후에도 쓰시마는 도서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쓰시마 번주의 후계자에게 발급되는 兒名圖書이다. 앞서 언급한 彦三圖書는 아명도서의 일종으로, 조선 전기 쓰시마 번주 혹은 그 아들에게 몇 차례 발급된 사례를 근거로 1612년(광해군 4) 소 요시토시[宗義知]의 아들 彦三(소 요시나리, 宗義成)⁴⁾에게 발급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쓰시마는 번주의 嫡子가 출생하거나, 막부의 承嫡 허락을 받게 되면 아명도서를 관례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아명도서 발급 교섭은 장기화되거나 무산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마는 17세기 彦滿圖書를 비롯하여 右京圖書, 次郎圖書 등의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쓰시마의 끈질긴 시도의 결과로 1713년(숙종 39) 쓰시마는 彦千代圖書를 발급받기

2) 사송선 1척마다 품목과 수량이 규정된 ‘정액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선에 도항하는 사송선의 수는 교역의 기본액을 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쓰시마는 이미 정약된 번주의 세전선 외에 일본 국왕사, 수직인선, 수도서선의 도항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역량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왕사나 수직인선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국왕의 사절은 쓰시마 번주의 문인을 지참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며, 조선에서도 일본 사절의 上京을 허락하지 않아 막부에서 직접 국왕사를 파견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수직인은 직접 내조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파견할 수 없고, 사망 이후에도 가족이 계승하는 사례가 적었다(졸고, 『17세기 전반 圖書制 재개와 운영』, 『동북아문화연구』 75, 2023, 74~75쪽).

3) 17세기 전반 쓰시마에 발급된 도서에 관해서는 앞의 논문, 2023, 75~80쪽 참조. 본고 3장 <표 2>에서 정리하였다.

4) 초기 이름은 彦七이었으나 이후 彦三으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도서의 印文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선에 나가는 사송선이 지참하는 서계에는 ‘平彦三’으로 작성하여 보냈다(『동문회고』 부편11 「진현」).

에 이르렀다. 주목할 점은 이후 아명도서 발급에 대한 조선 측의 대응 방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726년(영조2) 彌一圖書의 경우 쓰시마가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발급될 정도로 도서 발급은 이전 시기에 비해 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후 쓰시마의 행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17세기 쓰시마는 아명도서 발급에 외교적 노력을 해 왔고, 18세기 초에는 이전보다 원만하게 발급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아명도서 요청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도서 요청이 왜 이 시기에 이르러 중단되었을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실무적인 필요성으로 인한 변화일까? 혹은 조일 관계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까? 나아가 이 시기 도서 요청의 공백기가 19세기 후반 양국관계의 와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8세기 중반 이후 쓰시마가 아명도서 요청을 중단한 배경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17세기 중~18세기 전반 아명도서 발급의 추이와 제도의 정착

먼저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의 아명도서 발급 실태와 교섭 과정을 분석하여 도서 발급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쓰시마의 요청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이 수립한 도서 운영 방침이 교섭 과정을 통해 어떻게 관철되고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졌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 1>에서는 1612년(광해군 4) 彦三圖書 이후 쓰시마의 요청 현황과 이에 대응하여 조선이 제시한 발급 요건을 정리하였다.

〈표 1〉 17세기 중반~18세기 전반에 진행된 아명도서 교섭 현황

	단계	교섭 기간*	도서	조선의 발급 조건	발급 여부
1	1	1640.09~1642.04	彦滿圖書	이전에 발급한 彦三圖書 반납	○
2		1683.06~1692.06	右京圖書	彦滿圖書 반납	X
3		1705.02~1705.11	次郎圖書	번주에게 아명도서는 발급 불가	X
4	2	1709.04~1712.10	彦千代圖書	교간법 처벌을 약조로 체결, 별도 서계를 통한 도서 요청	○
5	3	1721.06~1721.09	岩丸圖書	조정외 특별한 은혜로 발급	○
6		1726.08~1726.09	彌一圖書	선례에 따른 발급	○

*쓰시마가 도서를 요청한 때부터 조선이 도서를 발급한 시기 또는 쓰시마가 도서를 요청한 마지막 시기까지를 교섭 기간으로 설정함.

1612년 소 요시토시[宗義知]의 아들이 彦三圖書를 발급받은 이래, 쓰시마는 지속적으로 아명도서를 요청하였다. 〈표 1〉을 보면, 쓰시마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도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쓰시마의 요청을 즉시 수락하지 않고 구체적인 도서 발급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쓰시마의 수용 여부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조선의 발급 조건을 크게 세 단계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3번 사례에 해당하며, 이전에 발급한 아명도서의 반납을 의무화하고, 이미 번주의 신분인 자에게는 아명도서를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조선 전기 아명도서 운영 사례와 그로 인한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세기 초 발급된 彦三圖書는 쓰시마가 조선 전기 번주의 아들에게 발급된 선례를 전거로 삼아 요청한 것이었다.⁵⁾ 1452년(단종 즉위년) 쓰시마 번주 소 시게모토[宗成職]가 冠名圖書[번주 도서]와 함께 그의 아명으로 받은 千

5) 1612년 발급받은 彦三圖書는 쓰시마가 熊滿의 사례를 들어 요청한 것이었다(『東萊府接倭倭啓啓錄可考事目錄抄冊』 신해년(1611) 12월).

代熊圖書가 그 시초가 되었고⁶⁾, 이후 1522년 소 모리나가[宗盛長]의 아들 熊滿이, 1564년 熊壽가 도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명도서 발급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발급 대상이 처음에는 번주 본인이었다가, 다음에는 번주의 아들에게 발급되었다. 또한 熊滿의 경우 일찍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파견되는 세견선[兒名送使]이 1586년까지 파견되는 등 운영상의 허점도 발생하였다.⁷⁾

전란 이후 국교를 재개한 조선은 이와 같은 운영상의 폐단을 우려하였고, 아명도서의 발급과 운영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은 이전의 관행적인 발급에서 벗어나 아명도서의 반납을 의무화하고, 번주라는 직책에 따른 도서를 발급하는 것을 핵심 규정으로 삼았다. 이는 도서 발급을 개인적 시혜가 아닌, 직책과 신분에 대응하는 제도적 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1615년(광해군 7) 조선은 번주직을 승습한 소 요시나리[宗義成]에게 이전에 발급했던 彦三圖書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요시나리는 모친인 威德院이 그의 아명도서를 가지고 있어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고, 아직 아들이 없어 후사를 이을 때까지 존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선이 이를 일시적으로 수용하였다.⁸⁾ 이후 요시나리가 아들을 얻어 1640년

6)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1월 28일.

7) 1564년에 熊壽는 번주의 아들로서 도서를 받았지만, 정확히 누구의 아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熊滿과 熊壽圖書의 이름으로 세견선이 1586년까지 해마다 조선에 파견되어 두 도서의 운영 기간이 상당 기간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8) 『증정교린지』 권1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번례집요』 권2 「도서·상직」 경진년(1640) 11월. 조선이 세운 도서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데에는 당시 조선과 쓰시마가 통신사 파견을 두고 한참 갈등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쓰시마는 1613년부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의 혼례를 축하하는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조선은 전례가 없음을 들어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615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이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 세력을 완전하게 평정한 소식을 전하며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었다(줄고, 「17세기 전반 圖書制 재개와 운영」, 『동북아문화연구』 75, 2023, 각주 75).

(인조 18) 쓰시마에 파견된 문위행을 통해 아들 彦滿의 도서를 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즉시 彦三圖書의 반납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도서 발급 규정을 관철하고자 하였다.⁹⁾

이때 쓰시마는 彦滿圖書를 발급받기 위해 왜관 이전 등의 여러 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병자호란(1636) 당시 막부 내에서 제기된 출병 논의를 언급하며 조선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쓰시마가 요청한 왜관 이전이나 일본의 병력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였고, 이를 외교적 실리를 얻기 위한 술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선은 彦三圖書의 반납이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였고, 결국 조선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한 쓰시마는 彦三圖書를 반납한 뒤에야 彦滿圖書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1642년 3월 쓰시마는 彦三圖書를 반납하는 대신 彦滿圖書로 보내는 사송선[彦滿送使]을 ‘萬松院送使’의 예에 준하여 접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쓰시마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장기적인 부담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 조선은 쓰시마에게 조선의 은혜를 주지시킨다는 명분하에, 앞서 회수한 彦三圖書를 彦滿圖書와 함께 허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⁰⁾ 이는 쓰시마의 과도한 접대 요구를 차단하는 동시에, 도서 발급에 대한 주도권이 조선에 있음을 주지시키는 고도의 외교적 계산이 깔린 대응이었다.

위와 같이 비록 일시적으로 두 도서의 병행 사용을 허락하는 예외가 발생하였으나, 조선은 이후의 사례에서도 도서의 운영 규정을 일관되게 고수하였다. <표 1>의 두 번째 사례인 1683년(숙종 9) 右京圖書 요청 당시에도, 조

9)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경진년(1640) 11월, 신사년(1641) 2월.

10) 彦滿圖書 발급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줄고, 「17세기 중반 조일관계의 전개와 彦滿圖書 교섭」, 『전북사학』 59, 2020 참조.

선은 이전에 발급했던 요시자네의 아명도서[彦滿圖書] 반납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였다.¹¹⁾ 이에 쓰시마는 재판차왜를 연속 파견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중복 도항하는 등, 조선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교섭 방식을 구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쓰시마는 과거 彦三·彦滿圖書가 병존했던 사례를 근거로 삼는 한편, 살아있는 번주의 아명도서를 반납하는 것은 신변에 불길한 징조라는 감정적인 호소까지 곁들이며 右京圖書 발급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右京圖書 발급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재판차왜의 체류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중복 도항할 시에는 日供을 중단하는 강경책을 병행하였다. 특히 1687년 재판차왜 토보 추에몬[唐坊忠右衛門]이 체류 중인 상황에서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이 추가로 도항하자, 조선은 기존 재판차왜의 일공을 중단하고, 새로 온 재판차왜에게는 접대 불허라는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였다. 조선은 규정 위반 시에는 접대 중지라는 단호한 대응을 지속하며 彦滿圖書의 반납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¹²⁾

결국 1692년 6월 右京이 번주직을 승습하면서 아명도서를 요청할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¹³⁾ 그럼에도 쓰시마는 右京圖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번주가 된 右京에게 그에 따른 관명도서가 발급될 것이므로 이전의 아명도서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격식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이를 일축하였다. 그리고 1693년 12월 조선이 신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의 관명도서를 발급하

11)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갑자년(1684) 4월.

12) 右京圖書 발급에 대한 교섭은 줄고, 「17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右京圖書 교섭」, 『한일관계사연구』 73, 2021 참조.

13) 右京은 1671년 3월 26일 소 요시자네의 아들로 태어났고, 1684년 12월 從四位下, 右京大夫에 서임되었다. 1692년 6월 27일 요시자네가 隱居하면서 번주직을 승습하였다. 그러나 1694년 9월 27일 에도에서 사망하였다.

면서¹⁴⁾ 右京圖書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조선의 이와 같은 일관된 기조는 <표 1>의 세 번째 사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1694년(숙종 20) 요시쓰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의 동생 次郎이 번주[소 요시미치, 宗義方]가 되자, 쓰시마는 그의 아명도서[次郎圖書]를 요청하였다.¹⁵⁾ 이에 대해 조선은 과거 아명 도서의 발급이 일시적인 恩典에 불과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전례로 삼지 말라는 선대의 하교를 근거로 요청을 거절하였다. 특히 유년기에도 요청하지 않았던 아명도서를 번주직을 승습한 후에 요청하는 것은 규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송선을 보내기 위한 목적의 도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次郎圖書 발급은 무산되었다.¹⁶⁾

이처럼 右京과 次郎의 사례를 거치며 조선은 관행에 의존하던 임의적인 도서 발급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서의 반납을 의무화하고 직책에 부합하는 도서를 발급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은 도서 발급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대일외교에서 통제 수단으로 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확립된 도서 발급을 통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조선은 두 번째 단계인 1709년(숙종 35) 彦千代圖書 교섭 과정에서 이를 실질적인 외교 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표 1>을 보면, 1709년 쓰시마는 요시미치[宗義方]의 還島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문위행을 통해 彦千代の 도서를 요청하였다.¹⁷⁾ 당시 조선은 왜관 내 교간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약조로 명문화하려 했으나, 쓰시마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교섭은 답보 상태였다.

14)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계유년(1693) 12월.

15)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을유년(1705) 2월.

16) 『비변사등록』 숙종 31년(1705) 11월 28일.

17)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기축년(1709) 4월.

이에 조선은 쓰시마의 彦千代圖書 발급 요청을 현안을 해결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피하였다. 즉, 도서 발급의 조건으로 犯奸倭를 조선의 법규와 동일하게 사형[同律]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한편, 도서를 요청하는 방식을 기존의 口頭나 서계에 부수적으로 언급하던 관행에서 ‘별도의 서계’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는 도서 발급 규정을 고수하는 동시에, 별도의 공식 서계를 통해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확립한 것이었다.

결국 쓰시마는 1711년에 파견된 통신사와 범간왜 처벌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한 약조체결에 합의하였다.¹⁸⁾ 이어 1712년 10월에는 예조와 동래부에 彦千代圖書 발급을 요청하는 서계를 제출함으로써 도서를 발급받는데 성공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조선은 17세기 초부터 견지해 온 도서 발급 규정을 전략적 카드로 삼아 외교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언천 대도서의 발급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조선이 설정한 규범을 준수할 때 비로소 도서 발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쓰시마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표 1>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아명도서 발급이 안정적인 정착기에 접어든다. 1721년(경종 1) 6월 쓰시마가 요시미치의 아들 岩丸의 도서를 요청하자, 조선은 ‘조정의 특별한 은혜’를 명분으로 그해 9월 도서를 발급하였다.²⁰⁾ 이어서 1726년(영조 2) 8월 소 요시노부[宗義誠]의 아들 彌一의 도서

18) 조선은 범간왜에 대해 조선과 同律[사형]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쓰시마는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자고 제안하였다. 교간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로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범간왜 처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신묘약조로, 1) 쓰시마 사람이 왜관 밖으로 나가 여인을 강간한 자는 울문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논한다. 2) 여인을 유인하여 화간한 자 및 강간하려다 이루지 못한 자는 영구히 먼 곳에 유배한다. 3) 여인이 몰래 왜관에 들어왔는데 잡아 보내지 않고 간통한 자는 次律로 다스린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19)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임진년(1712) 10월.

20)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신축년(1721) 9월.

요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발급이 이루어졌다.²¹⁾ 당시 조선은 ‘이미 한번 허락한 이상 다시 거절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발급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확립된 선례를 따르는 것이 도서 발급의 확고한 규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발급 현황은 과거 도서 발급을 둘러싼 지난한 교섭과 불투명했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발급 과정이 매우 신속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17세기 전반부터 모색되어 온 아명도서 발급 체계는 조선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안착하였다. 결과적으로 쓰시마는 조선이 설정한 틀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도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전례를 확보하게 된 셈이었다.

Ⅲ. 18세기 중반 이후 아명도서 요청 공백과 원인

18세기 전반 이후 아명도서 발급 규정이 확립되면서 아명도서 전례는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로써 아명도서 제도는 조일 외교의 한 축으로 안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약 1세기 동안 발급 요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며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제도적 정착 직후에 나타나는 이 장기적 공백이 당시 조일관계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 그 이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기 쓰시마가 처했던 대내외적 상황을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체적인 실마리를 살펴보기 위해 쓰시마의 재정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무렵 쓰시마는 조일 무역의 부진에 따른 재정난으로 막부에 자금 원조를 요청할 만큼 궁핍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무역의 위축은 단순한 일

21) 『영조실록』 권10, 2년(1726) 9월 8일.

시적 현상이 아니라, 당시 조일 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아명도서 발급 요청이 공백기였던 18세기 중반은 조일 무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시기였다. 17세기까지 쓰시마는 중국산 견직물과 白絲, 조선산 인삼을 일본으로 수입하고, 일본산 銀을 지불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누렸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일본 내 白絲 생산량이 증가하고, 나가사키에서 중국과의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을 경유한 白絲 유입이 급감하였다. 결국 1742년 이후에는 조선의 중국산 白絲 수출이 사실상 단절되기에 이르렀다.²²⁾ 이와 함께 조선산 인삼 역시 공급망의 변화를 겪었다. 인삼 수요는 여전히 높았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²³⁾ 인삼 가격이 상승하였다. 한편 막부는 일본산 인삼 재배를 장려하고, 중국과 아메리카산 인삼 수입을 통해 조선산 인삼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50년대 이후 조선산 인삼 수출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품목의 변화에 더해, 막부의 화폐 정책은 쓰시마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 17세기 말 막부는 주조 이익을 위해 은의 순도를 기존 80%에서 64%로 낮춘 元祿銀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화폐 개악에 대응하여 조선은 인삼과 白絲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을 27%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²⁴⁾ 이 조치로 인해 白絲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쓰시마의 무역 이윤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품질이 저하된 은의 유통 소식에 조선 상인들이 거래를 기피하면서 조일

22)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407쪽, 〈표Ⅱ-30〉 참조.

23) 조선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인삼은 재배삼이 아닌 자연삼으로, 자연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기후나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아 수출량의 변화가 매우 심하였다. 또한 자연삼은 부존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삼의 인공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선의 인삼 수출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233쪽).

24) 정성일, 앞의 책, 2000, 196~198쪽.

교역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²⁵⁾, 결과적으로 일본 내에서 대조선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심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²⁶⁾

이러한 무역 쇠퇴에 직면한 쓰시마는 18세기 초부터 막부에 재정 곤란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쓰시마가 내세운 논리는 이른바 ‘조선 방비의 역(朝鮮押えの役)’이었다. 조일 간의 외교 업무는 도쿠가와 막부가 쓰시마 번주에게 부여한 家役이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막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²⁷⁾ 이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쓰시마는 1776년부터 막부로부터 매년 금 1만 2천 냥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데 성공하였다.²⁸⁾ 당시 쓰시마가 막부에 지원을 요청한 명분은 조선과의 사무역

25)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243쪽.

26) 쓰시마의 재정 악화에 대해 조선과의 무역 부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성일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1790년 기준으로 무역 이윤이 쓰시마 전체 재정 수입의 35.5%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재정 파탄의 근본 원인은 무역 부진이 아닌 지출 구조에 있었다는 것이다. 쓰시마 번은 막부의 재정 지원금을 상회하는 비용을 參勤交代와 江戸藩邸 유지비 등에 지출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쓰시마의 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었음을 규명하였다(앞의 책, 2000, 213~232쪽). 실제로 쓰시마 번은 막번 체제 내에서 ‘10만 석 격’의 다이묘로서 격식과 가신단을 유지하는 데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러한 방만한 운영이 구조적인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7) 17세기 말 조선의 대일정책의 변화와 도쿠가와 막부의 ‘武威’의 후퇴와 문치주의로의 전환은 쓰시마의 위기 의식을 불러왔다. 또한 18세기 초 막부에서 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세운 방침은 쓰시마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1709년 번주의 家臣이었던 다키 로쿠로에몬[瀧六郎右衛門]이 재정 궁핍을 타개할 방안으로 정리한 내용을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隣交始末物語』를 통해 발전시켰다(田代和生, 『日朝交易の對馬藩』, 創文社, 2007, 18~88쪽). 이후 쓰시마 내에서는 외국에 대한 ‘武備’를 강조하는 주장이 등장하여 이후의 막번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진, 「17세기 말 朝日關係의 변화와 對馬藩」, 『일본역사연구』 49, 2019; 松本智也, 「18~19세기 對馬 지식인들의 ‘藩屏’론 - 역사서 편찬에 보이는 자아인식 형성-」,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참조.

28) 쓰시마가 막부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234~235쪽 表5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 윤투숙은 10회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밝혔다(『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再考) -1635년 사행 및 막부의 재정원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단절이었다.²⁹⁾

이렇듯 쓰시마는 조일 무역의 쇠퇴와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막부의 원조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시마의 재정에서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 거둔 이윤이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조일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³⁰⁾ 즉 쓰시마는 막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는 ‘무역 부진에 따른 재정난’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³¹⁾, 실제로는 여전히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일 외교와 무역이 쓰시마의 존립에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아명도서 요청이 100여 년간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쓰시마는 축소된 무역 규모를 만회하기 위해 도서 확보에 사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17세기 전반, 쓰시마는 1612년 조선 전기의 사례를 소환하여 발급받은 彦三圖書를 포함하여 5개의 도서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 <표 2>는 쓰시마 번주 외에 추가로 확보한 도서를 통해 운영되었던 受圖書船의 현황이다.

29) 그러나 당시 조일 간의 사무역은 하향세에 있었으나, 완전하게 단절된 것은 아니었으며, 19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즉, 왜관에서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은 상인과 쓰시마 代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開市’는 19세기 중반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시율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1720년대에는 73.8%의 개시율에서 1840년대에는 24.2%로 감소하였다(정성일, 앞의 책, 98쪽; 森晉一郎,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の展開 -安永年間の私貿易を中心として-, 『史學』 56-3, 1986).

30) 각주 26) 참조.

31) 荒野泰典은 쓰시마에 대한 막부의 원조 이유를 크게 군사적 이유, 조선 무역 진흥, 외교 업무에 대한 扶助, 조선 무역의 부진과 단절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앞의 책, 1988, 234~235쪽).

〈표 2〉 17세기 전반 쓰시마에서 파견된 수도서선 일람표

	玄蘇送使 (以酹菴送使)	景直送使 (副特送使)	彦三送使	流芳院送使	萬松院送使
수도서인	玄蘇	柳川景直	宗義智의 아들 彦三	柳川調信의 院 堂	宗義智의 院堂
접대 영향 (체류일수)	하선다례1, 하 선연1, 노차연1, 예단다례1, 상선 연1(85일)	하선다례1, 하선 연1, 별연1, 노 차연1, 예단다례 1, 상선연1, 명 일연4, 별하정2, 예하정2(110일)	하선다례1, 하 선연1, 노차연1, 예단다례1, 상선 연1, 명일연3(85 일)	-	하선다례1, 하 선연1, 노차연1, 예단다례1, 상선 연1, 명일연3(85 일)
무역량 (진상, 공무역)	公木 6同 2疋	15同 16疋 23尺 3寸	9同 28疋 24尺	-	15同 17疋 11尺 6寸
	공목 25동 13필 11척 6촌	200동	34동 14필	-	53동 15필
서계대응	예조좌랑	예조좌랑	예조좌랑	예조좌랑	예조좌랑
비고	1639년 以酹菴 도서로 발급	1635년 도서는 반납, 1639년 부 특송사로 재개	平彦滿送使부터 서계 대응을 예 조좌랑에서 예 조참의로 격상	1635년 반납, 1639년 재발급되 었다가 곧 폐지	

*『증정교린지』권1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年例送使」 참조.

17세기 전반에 쓰시마에서 파견하는 수도서선은 모두 5척으로, 매년 1회 파견되었으며 품목과 수량이 정해진 ‘정액제’로 운영되었다.³²⁾ 〈표 2〉를 보면,彦三送使의 무역량은 진상과 공무역을 합산하면 43동 42필 24척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대일 외교의 핵심축이었던 玄蘇送使(이후 以酹菴送使)보다 우위에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번주가 파견하는 세견선 20척과 비교해도 최상위 대우를 받는 특송선 3척 등을 제외하면, 일반 세견선의 무역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³³⁾ 여기에 求請物과 陸物이 제공되었으며, 왜관에 체재하는

32) 조선은 1612년부터 세견선의 무역량을 정액하여 분쟁의 폐단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613년 3월 번주가 파견하는 20척의 세견선 가운데 특송선의 공무역액을 151동으로 결정하면서 공무역의 물품과 수량의 정액제가 실시되었다(『변례집요』 권8 「공무역」 계속년 3월).

33) 번주가 파견하는 3척의 특송선의 무역량(진상+공무역)은 각각 166동 6필 11척 6촌

동안 접대 및 日供, 귀국 시의 渡海糧米까지 고려한다면 아명도서를 통한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였다.³⁴⁾

나아가 17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아명송사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표2>에 따르면, 수도서선이 파견시 지참하는 서계의 상대는 조선의 예조좌랑이었다. 이는 번주가 파견하는 세견선의 서계가 예조참의를 상대로 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彦三送使 역시 초기에는 예조좌랑과 서계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平彦滿送使부터는 번주의 세견선과 같이 예조참의로 격상되었다. 당시 쓰시마는 彦滿이 에도에서 태어나 막부 장군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대를 요구하였고, 이것이 반영되면서 서계 상대가 격상된 것이다.³⁵⁾

따라서 쓰시마에게 아명도서는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고, 대외적 위상을 확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쓰시마가 아명도서의 발급과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경제적 실익을 수반하는 도서요청이 장기간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재정난 외에도 당시 쓰시마 내부에 특수한 사정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그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기 위해 18세기 중반 이후 쓰시마 번주의 가계 승계 양상과 실제 도서 발급 실태를 대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며, 세견제1선은 131동 42필 40척 6촌, 이하 16척의 세견선은 각각 10필 4동~10필 8동이 정액되었다.

34) 도해량미는 5섬 11말에서 2섬 2말까지 지급하였다.

35) 『증정교린지』 권1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자세한 내용은 졸고, 앞의 논문, 2020 참조.

〈표 3〉 18세기 중반 이후 쓰시마 번주와 아명도서 발급 실태

	쓰시마 번주 (생몰년)	아명	아명도서 발급~반납	번주 승습	비고
9대	宗義蕃 (1717~1775)	淺之允	-	1752.02(35세)	宗義誠의 차남. 형 宗義如의 사망으로 번주직 승습
10대	宗義暢 (1741~1778)	直丸	-	1762.04(21세)	宗義如의 아들
11대	宗義功 (1771~1785)	猪三郎	-	1778.03(7세)	宗義暢의 아들
12대	宗義功 (1773~1813)	富壽	-	1785.07(12세)	宗義暢의 아들
13대	宗義質 (1800~1838)	岩千代	-	1812.10(12세)	宗義功의 아들. 1811년 형(於臺)의 사망과 宗義功의 퇴후로 번주직 승습
14대	宗義章 (1817~1842)	彦滿	1823~1839	1839.02(22세)	宗義質의 장남
15대	宗義和 (1818~1890)	兵次郎	-	1842.10(24세)	宗義質의 차남
		勝千代 (1847~1849)	1859~1863	-	宗義和의 아들
16대	宗義達 (1847~1902)	善之允	-	1863.02(16세)	宗義和의 아들. 勝千代の 사망과 宗義和의 퇴후로 번주직 승습

*줄고, 『조선 후기 圖書制의 운영과 조일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43~144쪽, [표-6] 인용.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1732년 쓰시마 8대 번주 소 요시유키[宗義如]가 번주직 승습과 동시에 1726년에 발급받았던 자신의 아명도서[彌一圖書]를 조선에 반납하였다. 1716년 소 요시노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彌一은 1724년 번주의 嗣子로 인정받으면서 요시유키[義如]라 칭하였다.³⁶⁾ 그리고 1726년 5월 조선에서 쓰시마 번주 아들의 승적을 축하하는 문위행을 파견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쓰시마의 요청을 받아 9월에 彌一圖書를 발급하였다.³⁷⁾ 이후 1732년 요시유키가 번주직을 승습하여 그에 따른 관명도서[번주 도서]

36) 鈴木棠三編, 『宗氏家譜略』, 「第廿九代 義如君」, 1975년.

37) 『변례집요』 권2 「도서·상직」, 권18 「도해」, 『증정교린지』 권6 「문위각연례」.

를 발급받았고, 1734년 파견된 문위행을 통해 전 번주였던 요시노부와 미치히로[方熙]의 관명도서 및 彌一圖書를 함께 반납하였다. 이는 조선이 세운 ‘직책에 따른 도서 발급’이라는 규정을 준수한 모범적 사례로, 규정을 이행할 경우 아명도서의 안정적인 발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이후 장기간 쓰시마의 아명도서 발급 요청이 중단된 것은 당시 쓰시마 내부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었다. <표3>에 나타나듯, 이 시기 쓰시마는 번주의 빈번한 교체와 나이 어린 후계자의 급작스러운 승습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번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退休가 잇따르면서 후계자가 급하게 결정되어 번주직을 계승하거나, 후계자를 세우더라도 준비 과정 없이 급하게 번주직을 계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내부 사정은 후계자 신분으로 대내외적인 승인을 거쳐 아명도서를 요청할 만한 시간적·절차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3>에서 1752년 요시유키가 37살의 나이로 사망했을 당시 이미 그의 아들들이 연이어 사망한 데다가³⁸⁾ 삼남인 直丸이 아직 어렸으므로 요시유키의 동생인 淺之允이 에도에서 돌아와 급히 번주(소 요시아리, 宗義蕃)³⁹⁾가 되었다. 이 무렵 쓰시마는 조일 무역의 침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부에 경제적 원조를 청원하고 있었다. 특히 1750년 막부로부터 1만 냥의 무역자금 대부가 중단되면서 쓰시마는 자금을 확보하

38) 소 요시유키[宗義如]의 장남 万千代는 1736년에 출생하여 1751년에 사망하였고, 차남 龜次郎은 1740년에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다(鈴木棠三編, 『宗氏家譜略』「第二十九代 義如君」, 1975년).

39) 소 요시아리[宗義蕃]의 아명은 淺之允으로, 氏江家を 이어 氏江主水라 칭하며 家臣의 지위에 있었다. 1752년 형 요시유키가 사망하여 번주가 되면서 다시 宗氏로 고쳤다. 1757년 요시아리로 개명하였다(鈴木棠三編, 『宗氏家譜略』「第三十代 義蕃君」, 1975년).

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⁴⁰⁾ 이러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어린 번주 보다는 요시아리가 번주가 되는 편이 쓰시마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번주가 된 요시아리는 막부에 쓰시마의 외교와 국방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금 원조를 호소하였다. 그 결과, 쓰시마는 1754년 막부로부터 금 1만 5천 냥의 拜借를, 1755년에는 3년 동안 금 1만 냥의 拜領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1758년에는 조선과의 무역 부진을 이유로 5년 동안 금 1만 냥을 막부에서 借用하였다.⁴¹⁾

이후 1762년 요시아리가 번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 번주 요시유키의 아들 直丸이 번주(소 요시나가, 宗義暢)가 되었다. 그러나 요시아리는 요시나가가 어리다는 명분으로 別殿에서 藩政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고, 1768년에는 자신의 혈육을 번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세력들을 축출하고 권력기반을 재편하는 등 번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였다.⁴²⁾ 이처럼 요시나가의 藩 장악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식 후계자를 세우고 도서를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어린 번주들의 즉위가 잇따랐다. 요시나가의 아들들이 연달아 요절하고, 이어 1778년 요시나가 본인이 사망하자, 불과 7살이었던 넷째 아들 猪三郎이 번주(소 요시카쓰, 宗義功)가 되었다. 그러나 1785년 그가 쇼군을 알현하여 家督을 공식 상속하기 전에 사망하면서 번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졌

40) 長崎縣史編纂委員會 編, 『長崎縣史(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1037쪽.

41) 對馬教育會 編, 『改訂 對馬島誌』, 長崎県 : 對馬教育會, 1940, 429~432쪽(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42) 長崎縣史編纂委員會 編, 『長崎縣史(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1039쪽. 요시아리는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후루카와 즈쇼[古川圖書]를 추방하였다. 그리고 에도 藩邸의 家老였던 스키무라 나오키[杉村直記]를 쫓아내고 마쓰우라 게이센[松浦桂川]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마쓰우라는 오히려 번주 요시나가를 옹호하며 요시아리의 藩政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폭로하였다.

다. 전례상 영지가 몰수되거나 번주 지위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⁴³⁾ 쓰시마 家臣들은 요시카쓰[猪三郎]의 죽음을 은폐하고, 그의 동생 富壽를 번주로 세우고 요시카쓰라 칭하였다.⁴⁴⁾ 이와 같이 두 명의 소 요시카쓰가 등장하게 된 비정상적인 사정 하에서 조선에 아명도서를 요청하는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1812년 요시카쓰[富壽]가 갑자기 퇴휴하면서 그의 아들 岩千代가 12살의 나이로 번주(소 요시카타, 宗義質)가 되었고, 1863년 번주가 된 소 요시아키[宗義達]의 사례 역시 이와 유사하였다. 1842년 형 소 요시아야[宗義章]의 뒤를 이어 번주가 된 소 요시요리[宗義和]는 아들 勝千代の 아명도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으나, 勝千代가 곧 사망하고 요시요리 본인도 번 내 갈등으로 퇴휴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삼남 善之允이 아명도서를 요청할 여유도 없이 번주가 되었다.⁴⁵⁾

이처럼 쓰시마 번주의 빈번한 교체와 연소한 후계자의 승습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아명도서 발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동안의 아명도서 발급은 번주의 득남이나 막부의 承嫡을 조선에 통보하면, 이를

43) 對馬教育會 編, 『改訂 對馬島誌』, 長崎県厳原町: 対馬教育会, 1940, 440쪽(국립 중앙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44) 요시카쓰[猪三郎]에게는 富壽, 種壽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요시카쓰[猪三郎]가 사망하자 富壽를 요시카쓰로 세웠다. 그리고 種壽를 富壽로, 죽은 요시카쓰[猪三郎]를 種壽로 바꿔치기하여 種壽의 사망으로 발표하였다(長崎縣史編纂委員會 編, 『長崎縣史(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1047쪽; 鈴木棠三編, 『宗氏家譜略』「第三十二代 義功君」1975년).

45) 1858년 막부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와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1861년 러시아 군함이 쓰시마에 정박한 사건을 계기로 쓰시마는 藩 전체를 막부가 직할지로 수용하고, 쓰시마에게 규슈 지역의 10만 석의 땅을 달라는 移封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쓰시마의 이봉 요청에 대한 막부의 답변이 늦어지는 가운데 쓰시마 내의 무사들이 동요하며 에도까지 가서 항의한 사건을 계기로 번주 소 요시요리가 병을 칭하며 은거를 결정하며 그의 아들 善之允이 번주(宗義達, 소 요시아키)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3 참조.

축하하기 위한 문위행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나면 쓰시마가 공식 서계를 통해 도서를 요청하면 조선에서 도서를 발급하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었다.⁴⁶⁾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급작스러운 사정이 연이어 전개되면서 쓰시마가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절차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1726년 彌一圖書 이후 1세기 가까이 지속된 공백은 일차적으로는 쓰시마 번주 승습의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백이 전적으로 내부 사정에 의한 포기는 아니었다. 과거 쓰시마는 1683년 요시자네가 번주가 된 후에도 기존에 발급받은 아명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채 아들 右京의 도서를 요청하거나, 1694년 이미 번주가 된 요시미치가 아명도서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한때 무리하게 도서 요구를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변칙적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직책에 따른 도서 발급’이라는 규정을 일관되게 관철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쓰시마는 조선이 설정한 질서를 벗어난 요청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앞서 확인한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결국 쓰시마가 조선의 일관된 대응을 경험하며 기존의 관례를 벗어난 변칙적 요구를 지양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도서 요청의 공백기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가 바로 1824년 彦滿圖書의 요청과 발급이다. 1817년 11월 26일 번주 소 요시카타(宗義質)의 아들 彦滿이 에도에서 태어났고, 이후 막부 老中 등에 그 출생을 보고하였다.⁴⁷⁾ 이후 조선에도 이러한 소식을 알렸고, 1822년 7월에는 조선에서 이를 축하하는 문

46) 줄고, 「조선시대 兒名圖書에 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146~148쪽.

47) 『分類紀事大綱』Ⅷ(대마도중가문서자료집9, 국사편찬위원회, 2022), 「若殿様御誕生之一件」.

위행을 파견하였다.⁴⁸⁾ 그리고 동년 12월 쓰시마에서 재판차왜를 통해 彦滿圖書 발급을 요청하였고, 조선은 선례가 있음을 들어 발급을 승인하였다.⁴⁹⁾ 이후 彦滿이 변주직을 승습하자 규정에 따라 도서는 조선에 반납되었다.⁵⁰⁾ 1859년 勝千代の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다.⁵¹⁾ 이처럼 18세기 중반 이후 쓰시마가 처했던 상황은 변주의 빈번한 교체와 연소한 후계자의 승습으로 요약되며, 이는 기존의 아명도서 발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세기 가까이 이어진 아명도서의 공백은 아명도서 제도가 사문화되었다거나 혹은 양국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기인한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쓰시마는 무역 구조의 재편과 가계의 불안정이라는 위기 속에서 조선이 견지해 온 도서 규정에 반해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도서 요청을 유보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시기의 공백은 쓰시마가 조선의 대일 외교 질서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틀 안에서 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 아명도서는 쓰시마에게 경제적 이익과 그 위상을 확인받는 수단인 동시에, 조선이 확립한 대일 외교 원칙이 조일 관계의 현장에서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그렇기에 쓰시마가 아명도서 발급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의 원칙을 수용

48) 『변례집요』 권18 「도해」 壬午.

49) 『순조실록』 권26, 23년(1823) 11월 10일.

50) 彦滿의 이름으로 사송선을 보낸 것이 1824년 6월부터 1838년 6월까지이다. 당시 彦滿送使가 지참한 서계는 『동문휘고』 附編續 「진헌」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彦滿이 변주가 된 1839년부터는 彦滿送使의 서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변주가 된 이후 彦滿圖書를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51) 『비변사등록』 철종 10년 7월 22일.

하며 도서 요청을 중단하였던 사실은, 이러한 조선의 외교 원칙이 양국 간의 교섭 현장에서 관철되어 확고한 질서로 자리잡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명도서의 발급 추이와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이 구축한 외교 원칙이 조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작동하였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아명도서는 조선이 세운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조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 도서의 남발 등으로 인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발급’이라는 도서 규정을 확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쓰시마의 예외적인 발급이나 아명송사의 격을 올려달라는 전례 없는 요구가 있었으나, 조선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도서 발급 규정을 외교적 규범으로 안착시켰다. 이로써 쓰시마는 조선의 규정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아명도서 발급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외교적 전례를 확립하게 되었다.

둘째, 1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장기간의 도서 요청 공백은 제도의 약화나 관계의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조선이 확립한 외교 원칙이 조일 관계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안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당시 쓰시마는 조선과의 사무역 쇠퇴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아명도서를 통한 실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가까이 도서를 요청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연이은 번주의 교체와 급작스러운 사망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선의 발급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번주의 득남이나 막부의 承嫡 승인에 따른 조선의 문위행 파견과 도서 요청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도 쓰시마가 과거의 사례처럼 규정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로는 조선의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한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쓰시마로서는 확실한 후계자를 세워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도서 요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쓰시마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도서 제도가 오랜 공백 속에서도 실질적인 구속력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824년 彦滿圖書의 발급 사례는 장기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외교 질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19세기 전반에 이르러 조선의 도서 규정은 쓰시마의 판단과 행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확고한 질서로 자리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아명도서 체제의 정립 과정은 조선 후기 조일 관계의 지속성과 그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특히 1세기 가까운 도서 요청의 공백은 조선이 견지해 온 규범이 안착되었음을 반증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질서가 양국 관계를 전례라는 틀 속에 고착시켰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규범 안에서 누린 안정이 양국관계의 평화의 토대가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나 유연성을 무디게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세기 중반 일본의 외교 체제가 급변하던 시기, 조선은 서계의 형식을 타협하는 등 나름의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며 기존 체제하에서의 조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난 2세기에 걸쳐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도서 체제의 규범적 틀은, 조선의 이러한 자구적 노력이 급격한 외교

적 전환으로 급선화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 확립된 질서가, 대전환기에는 기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관성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 사이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 체제가 일궈낸 안정의 이면이 조일 관계의 격동기에 어떠한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6년 5월 16일

논문 심사일 : 2026년 5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5월 25일

참고문헌

1. 사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증정고린지』, 『변례집요』, 『동문회고』, 『東萊府接倭狀啓膽錄可考事目錄抄冊』
『分類紀事大綱』 VIII(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9, 국사편찬위원회, 2022)
『宗氏家譜略』(鈴木棠三編, 1975년)

2. 저서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田代和生, 『日朝交易の對馬藩』, 創文社, 2007.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長崎縣史編纂委員會 編, 『長崎縣史(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對馬教育會 編, 『改訂 對馬島誌』, 長崎県：對馬教育會, 1940.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3.

3. 논문

- 森晉一郎,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の展開 -安永年間の私貿易を中心として」, 『史學』 56-3, 1986.
松本智也, 「18~19세기 對馬 지식인들의 ‘藩屏’론 -역사서 편찬에 보이는 자아인식 형성-」,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유채연, 「조선시대 兒名圖書에 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 _____, 「17세기 중반 조일관계의 전개와 彦滿圖書 교섭」, 『전북사학』 59, 2020.
- _____, 「17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右京圖書 교섭」, 『한일관계사연구』 73, 2021.
- _____, 『조선 후기 圖書制 운영과 조일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_____, 「17세기 전반 圖書制의 재개와 운영」, 『동북아문화연구』 75, 2023.
- 윤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再考) -1635년 사행 및 막부의 재정원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 이해진, 「17세기 말 朝日關係의 변화와 對馬藩」, 『일본역사연구』 49, 2019.

Abstract

The Cessation of Tsushima's Requests for Amyeong-doso and Its Background Since the Mid-18th Century

YU, Chaeye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plomatic principles established by Joseon were institutionalized and operated within Korea-Japan relations by analyzing the issuance trends and operation of the Amyeong-Doseo (Childhood Name Seals) from the mid-17th to the early 19th centuries.

First, after the Imjin War, Joseon established strict regulations for the issuance of Doseo according to official title to rectify the previous malpractices of indiscriminate issuance. Despite Tsushima's irregular demands and attempts to elevate the status of these requests, Joseon consistently adhered to its principles, thereby consolidating these regulations into a formal diplomatic norm. Consequently, a diplomatic precedent was established in which Tsushima could secure its economic interests only by complying with Joseon's regulations.

Second, the hiatus in Doseo requests for nearly a century after the mid-18th century did not signify a weakening of the system or a distancing of relations; rather, it was the result of the practical binding force of the diplomatic norms established by Joseon. During this period, Tsushima was in desperate need of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 Amyeong-Doseo due to its financial situation deteriorated. However, recognizing that unreasonable demands deviating from the regulations could not override

www.kci.go.kr

Joseon's firm principles, Tsushima ceased submitting requests. This demonstrates that the Joseon-led diplomatic order remained stable and operative despite the prolonged hiatus.

key words

Joseon-Japan Relations, Amyeong-Doseo, Issuance based on official titles, Hiatus in Doseo requests, Diplomatic precedent